

## ◆ D-33 퇴직금중간정산과 퇴직금중도지급과의 차이?

### 1. 퇴직금중간정산제도

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의한 퇴직금중간정산제도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이라도 그간의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시행이 가능하며 근로자의 요구에 사용자가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.

퇴직금중간정산 이후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나 당해근로자의 근로년수와 관련있는 다른 근로조건(승진, 승급, 호봉, 상여, 연차유급휴가)에는 변동이 없음.

### 2. 퇴직금중도지급

(1) 퇴직금중간정산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반드시 근로자의 청구가 있어야 하나, 회사의 경영상이유로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

- ① 현장계약직의 경우 장기적으로 반복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현장을 이동할 때 퇴직금을 일방적으로 지급
- ② 연봉제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놓고 일방적으로 지급
- ③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변경단계에서 일방적으로 퇴직금지급
- ④ 합병 또는 영업양도양수시에 피합병회사 소속근로자에게 퇴직금 일방적으로 정산
- ⑤ 타회사로 전적시에 퇴직금 지급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됨.

- (2) 같은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한 사직서가 “비진의에 의한 의사표시(기망, 강요, 통정의 허위표시)”에 해당될 경우, 퇴직금중간정산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됨 --> 따라서 실제 퇴직당시의 평균임금에 충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 다음 퇴직금중도지급액을 공제한후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되므로,
- (3) 경영상 이유에 의한 사직절차를 거칠 경우에는 사직서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를 본인 의사에 의거 제출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고, 영구보존하여야 함.